

『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및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-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12조)
 -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, 구성, 임무 및 운영기간 등
-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~ 제15조)

-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, 심의, 소집 및 운영 등
-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22조)
 - 재난현장 조치, 재난상황의 통보,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, 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- 본 『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